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19
----------	-------

발의연월일 : 2026. 2. 5.

발 의 자 : 서미화 · 윤준병 · 이춘석
양문석 · 이연희 · 이정문
박홍배 · 김남희 · 박용갑
차지호 · 이용선 · 이수진
이학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에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간병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 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 급여를 실시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② ~ ④ (생 략) <u><신 설></u>	제41조(요양급여)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u>8. 간병</u> ② ~ ④ (현행과 같음) <u>제44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u> <u>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u> <u>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u> <u>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경제</u> <u>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u> <u>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일</u> <u>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u> <u>면제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 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